KOSHA GUIDE

C - 92 - 2013

- (다) 줄파기 작업 후에는 근로자의 넘어지거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 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.
- (7) SCW 흙막이 공사시 장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관련재 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현장 여건과 진행 공종별 장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의 각종 장비의 뒤집힘, 깔림, 끼임 등의 재해를 방지하고 장비의 통로는 배수가 잘 되도 록 조치하고 지반의 침하나 변형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지반을 보강 하여야 한다.(필요시 양질의 토사치환, 철판깔기, 콘크리트 포설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.)
- (나) 크레인, 천공장비 등 장비를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 장비이력카드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검사 등 이력을 확인하고, 작업 시작전에 권과방지장치, 브레이크,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(다) 지게차를 사용하여 자재를 실을 때에는 허용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 여서는 아니 되며, 무게중심을 확보하여 하물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라) 장비의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평탄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인양 장비의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고한 지반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 치환,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지반침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 장비를 반출하는 경우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- (마) 현장 내 장비의 이동경로 또는 인근에 고압전선로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작업하여야 하며, 그 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설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바) 장비의 리더(Leader) 길이를 고려하여 지상장애물이 없도록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